

**영등포구의회
제148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09. 9. 11.



**運 營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윤준용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이 2009.4.1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원 겸직 신고의 절차와 방법,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를 규정하여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방법 신설 (안 제15조)
-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의 제한 신설 (안 제16조)

■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2009. 4. 1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의원님들의 겸직신고 방법과 절차, 영리행위 제한 업무범위를 정하려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서는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규정을 강화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에 필요한 겸직 신고의 방법과 절차,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 범위를 조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 개정안은 제15조(겸직신고)에서 겸직신고 방법, 서식 등을 정하고, 제16조(영리행위의 제한)에서 소관 상임 위원회 직무 범위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명시된 소관 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행정안전부에서 이첩 된 표준 조례안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 9. 11.

보 고 자 : 권 오 운

관 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4.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방송공사와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 ②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제38조 (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